

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국외여행 규정  
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신연희 인

2015년 10월 30일

서울특별시 강남구 훈령 제221호

##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

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공무국외여행규정 서울특별시공무국외여행규정 및 서울특별시 권한위임 관련 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서울특별시”를 “서울특별시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전공무원”을 “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국외여행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국외여행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하여 30일이상”을 “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에 따라 30일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」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.)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자를”을 “사람을”로, “강남구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”를 “강남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강남구가 10인 이상의 단체공무원국외여행”을 “서울특별시 강남구(이하 “강남구”라 한다)가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”으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”를 “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및

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여행인원의 적합성
5. 여행경비의 적정성

제5조제6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호(중전의 제6호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유착 여부
7.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여부
8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, “8인”을 “8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위원은 본인이 국외여행 대상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을 도모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회무를 통할한다”를 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”를 “공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본문 중 “매주1회”를 “매주 1회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심의”를 “심사”로, “정기회”를 “정기회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심의위원회의”를 “심사위원회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결에 가름”을 “의결을 갈음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”를 “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”로, “심사요청 하여야”를 “심사 요청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3. 그 밖의 증빙서류

제9조제2항 본문 중 “자에”를 “사람에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5급이상”을 “5급 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및 시기”를 “및 시기 ”로, “있다”를 “있으며 의결권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행사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이 경우 의결권을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행사한다. 다만”을 “다만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공무국외여행방침 수립시 미리 행정국장(총무과장, 기획예산과장)”을 “공무국외여행 방침 수립 시 미리 행정국장, 총무과장, 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감안”을 “감안하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구자체 계획이 아닌 시 및 중앙부처등의”를 “강남구 자체 계획이 아닌 서울특별시 및 중앙부처 등의”로, “세미나등”을 “세미나 등의”로, “경우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, “행정국장(총무과장)”을 “행정국장, 총무과장”으로, “그러지 않은 경우는 참가를 억제한다”를 “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공무국외여행방침 수립시에는”을 “공무국외여행 방침 수립 시에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50일전까지”를 “50일 전까지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와”를 “각 호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

호 중 “방문여부”를 “방문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본문 중 “귀국후”를 “귀국 후”로, “해당업무”를 “해당 업무”로, “자를”을 “사람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1회2인”을 “1회 2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(이하 “이해관계자”라 한다.)과의 여행은 제한한다. 다만, 사업특성상 이해관계자와 여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1회15일”을 “1회 15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4일이내”를 “4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 2. 구미 등 그 밖의 지역 : 6일 이내

제15조제1항 중 “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경우나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”을 “경우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이해관계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여행을 제한 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가 공무원의 여행 경비를 부담할 경우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준용해야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귀국후 30일이내”를 “귀국 후 30일 이내”로, “정책기획과장”

을 “기획예산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일내에”를 “기일 내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대북관계”를 “여행자는 대북관계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여행자는 국외여행계획서 및 귀국보고서 등을 강남구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단, 국가 및 기관의 기밀 보호,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제19조제1항 중 “상당기간 관련직무”를 “상당 기간 관련 직무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구청장은 이해관계자와의 유착, 과도한 접대 방지 등을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·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<u>공무국외 여행규정</u> <u>서울특별시공무국외 여행규정</u> 및 <u>서울특별시 권한위임 관련 법령</u>이 정하는바에 따라 <u>서울특별시 강남구</u>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 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적용대상)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<u>서울특별시 강남구</u> 소속 <u>전공무원</u>으로 한다.</p> <p>②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공무원국외여행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<u>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</u>에 의하여 <u>30일 이상</u>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</p> <p>2. <u>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</u>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</p> <p>3. (생략)</p> <p>제3조(공무국외여행 허가) ①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등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서울특별시</u> <u>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적용대상) ① ----- ----- --- <u>공무원</u>-----.</p> <p>②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에 해당하는 공무원 국외여행----- -----.</p> <p>1. 「<u>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</u>」 <u>에 따라 30일 이상</u>----- -----</p> <p>2. 「<u>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</u>」 <u>에 따라</u>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공무국외여행 허가) ① --- ----- -----</p>

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4조(심사위원회 설치) ①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강남구가 10인 이상의 단체 공무원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관하는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제5조(심사위원회의 기능) 심사위원회는 공무에 의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여행인원

5. 여행경비

<신설>

<신설>

6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

-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.)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심사위원회 설치) ① -----  
----- 사람을 -----  
----- 강남구 -----  
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-----  
-----.

② 서울특별시 강남구(이하 "강남구"라 한다)가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원국외여행-----  
-----  
-----.

제5조(심사위원회의 기능) -----  
-----  
----- 각호의 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여행인원의 적합성

5. 여행경비의 적정성

6.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유착  
여부

7.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 
여부

8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



사항

제6조(심사위원회의 구성)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제7조(위원장 등)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(생략)

제8조(심사위원회 운영) ① 심사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주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한

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심사위원회의 구성) ① ----  
-----  
- 1명----- 8명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위원은 본인이 국외여행 대상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을 도모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제7조(위원장 등) ① -----  
----- 위원회의  
업무를 총괄한다.

② -----  
----- 공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-----  
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심사위원회 운영) ① ----  
-----  
----- 매주 1  
회 -----  
-----

다. 다만, 심의회 안건이 없을 때에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다.

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 경우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도 재적위원으로 본다.

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사로 하여금 의결서를 작성하게 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제2항의 의결에 가할 수 있다.

제9조(심사절차) ① 주관국장 등은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 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요청 하여야 한다.

- 1. 2. (생략)
- 3. 기타 증빙서류

②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자에 대하여 공무국외여행을 명한다. 다만,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

----- . ----- 심사-----  
----- 정기회의-----  
----- .

② 심사위원회의 -----  
-----  
----- .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의결을 같음----- .

제9조(심사절차) ① -----  
-----  
-----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-----  
----- 심사 요청하여야 -----  
----- .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그 밖의 증빙서류

② ----- 사  
람에 -----  
----- . ----- 5급 이상 -----  
-----



무과장·기획예산과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구자체 계획이 아닌 시 및 중앙부처등의 공무국외여행에 참가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등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는 최초의 참가 협의단계부터 제1항의 행정국장(총무과장),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해야 하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참가를 억제한다.

④ 공무국외여행방침 수립시에는 여행국의 관련 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실시해야 한다.

⑤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 50일전까지 단체 여행계획서와 질문서, 수집자료 목록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주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여행목적지 심사) ① 여행목적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여행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 방문여부
2. 3. (생략)

-----  
-----.

③ 강남구 자체 계획이 아닌 서울특별시 및 중앙부처 등의 --  
-----  
- 세미나 등의 -----  
----- 경우에는 -----  
----- 행정  
정국장, 총무과장-----  
----- 그렇지 않  
은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한다.

④ 공무국외여행 방침 수립 시  
에는 -----  
-----.

⑤ -----  
----- 50일 전까지 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12조(여행목적지 심사) ① ----  
-----  
- 각 호와 -----.

1. -----  
-- 방문
2. 3. (현행과 같음)

② (생략)

제13조(여행자 심사) ① 현재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고, 귀국후 상당한 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. 다만, 위원장은 여행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행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적격자와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② 여행인원은 당해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한정한다.

③ 동일목적으로의 여행인원이 1회2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별 수행업무가 분명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<신설>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여행자 심사) ① -----  
-----  
--- 귀국 후 ----- 해당  
당 업무----- 사  
람을 -----.

② ----- 해당 -----  
-----  
---

③ -----  
- 1회 2명-----  
-----  
--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(이하 "이해관계자"라 한다.)과의 여행은 제한한다. 다만, 사업특성상 이해관계자와 여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

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.

제14조(여행기간 및 시기선정) ①

여행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왕복 소요기간을 포함하여 1회15일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히 그 사유가 소명되어야 한다. 이 경우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.

1. 아주지역(대양주 포함) : 4일 이내
2. 구미 등 기타지역 : 6일이내

②·③ (생략)

제15조(여행경비) ① 여비의 산출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.

- ② (생략)
- ③ 자체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나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14조(여행기간 및 시기선정) ①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1회 15일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1. ----- 4일
2. 구미 등 그 밖의 지역 : 6일 이내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여행경비) ① -----  
-----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따라 -----.
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-----  
- 경우 -----  
-----  
-----.

④ 이해관계자가 경비를 부담하

<신 설>

제18조(귀국보고서) ① 여행자는 귀국후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를 정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여행자가 부과된 자료 및 귀국보고서를 기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.

④ 대북관계, 외교·통상관계등 국가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관과에 통보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는 경우 여행을 제한 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가 공무원의 여행 경비를 부담할 경우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준용해야 한다.

제18조(귀국보고서) ① -----  
귀국 후 30일 이내-----  
----- 기획예산과장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기일 내 -----  
-----  
-----.

④ 여행자는 대북관계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⑤ 여행자는 국외여행계획서 및 귀국보고서 등을 강남구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단, 국가 및 기관의 기밀 보호, 보안유지

제19조(여행자의 사후관리) 구청장은 공무국외여행자가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당기간 관련직무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9조(여행자의 사후관리) ①--

-----

-----

----- 상당 기간 관련 직무 -----.

② 구청장은 이해관계자와의 유착, 과도한 접대 방지 등을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·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

##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### 1. 개정이유

국외공무여행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로 내실 있는 공무국외여행을 유도하고, 여행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부패유발 소지를 제거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유착 여부,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가능성 심사 추가
-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 원칙적 제한 규정 추가
-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사위원 제척 제도 추가
- 여행계획서, 귀국보고서를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국외출장연수정보 시스템에 공개
- 이해관계자와의 유착 방지 등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·감사 실시 조항 추가